

협약형 특성화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안)

□ 추진 배경

- 국민주권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25.9.16.)를 발표,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혁신주체 간 연계·협력 강화 추진
- 특성화고-기업-(전문)대학-교육청 및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한 협약형 특성화고*('25년 누적 20교)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 운영 추진
- * 국정과제 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30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 50교 지정 추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

① 지역 협업체계 기반의 지역인재 양성 특성화고 육성 근거 마련 (시행령 제91조 제3항 신설)

-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성화고등학교의 장 등이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지역 인재 양성 위한 특성화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③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성화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지역 협업체계 기반의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의 지원 근거 마련 및 교육부의 지원 근거 마련 (시행령 제91조제4항 및 5항 신설)

-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협업체계 기반의 특성화고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④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 대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 대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향후 일정

- 부내 협의 및 보고: ~'25.12월
-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등: ~'26.3월
- 규제 심사 및 법제 심사: '26.4월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26.5월

참 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기업-(전문)대학-지자체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및 정주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육성·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 협업체계 기반의 지역인재 양성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근거 마련(안 제91조제3항 신설)

지역 협업체계 기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성화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지역 협업체계 기반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역의 지원 근거 마련 및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91조제4항 신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조례
제정 및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지역 협업체계 기반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91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전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성화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성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할 수 있다.
- ④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 대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05